

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

신청인	선임인 [] 해당 [] 비해당				
	사업장명				
	주소				
승인번호					
제품명					
취소 결정	명칭(대체명칭)	(CAS No.)	함유량 (대체함유량)	취소 결정	취소사유
	1.			[] 해당 [] 비해당	
	2.			[] 해당 [] 비해당	
	3.			[] 해당 [] 비해당	
	※ 취소 결정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(그 외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)		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2조제8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직인